

#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림

## □ 예비비 사용 내역 : 1건, 850백만원(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)

### ○ 사용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예산과목					당초 예산액	증감액		변경후 예산액	사용 일자	비고
	정책	단위	세부	목	세목		증	감			
예비비	사업비용 (700)	예비비 (800)	예비비 (801)	예비비 (801)	일반예비비 (01)	1,158		△850	308	'22.7.6	
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(2단계)	사업비용 (700)	영업비용 (710)	일반관리비 (751)	배상금등 (305)	배상금등 (01)	0	850		850	'22.7.6	

### 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(준공기한 등 지체) '중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' 시공사인 지에스건설(주) 외 2개사는 본 공사의 준공기한('17. 4. 28.) 이후인 '17년 10월 31일에 공사완료 및 '18년 3월 3일에 종합시운전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준공 및 성능보증 기한을 지체하였음

▶ 성능보증(시설현대화) 지체일수 : 309일('17.4.29.~'18.3.3.)

· 종합시운전 단계에서 스트레이너 노즐 및 여재 폐색이 발생하여 보증수질 초과가 예상되어 신뢰성 운전을 중단하였으며, 이후 여재 교체, 시설개선공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종합시운전 지체

▶ 공사(자전거도로) 지체일수 : 186일('17.4.29.~'17.10.31.)

· 현대화시설에 포함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부분을 시공사 귀책에 의하여 지체

- (지체상금) 이에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'18년 3월 지체상금 3,444백만원을 부과하여 지에스건설(주) 외 2개사에서 '18년 4월에 납부 완료하였음

〈지체상금 부과 내역〉

(단위: 백만원 / 12차수 공사분)

구 분	적용공사비	지체일수	요율	부과금액	비 고
시설현대화	10,880	309	0.10%	3,362	
자전거도로	440	186	0.10%	82	
<b>계</b>	<b>11,320</b>			<b>3,444</b>	

- (반환 청구 소송) 이후 지에스건설(주) 등은 지체상금 3,444백만원 중 과지급금 (1,722백만원) 및 종합시운전시 하수처리에 따른 부분사용 운영비(1,536백만원) 총 3,258백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'18.8.8.자로 제기함

① 지체상금 과지급금 반환 요구 : 1,722백만원

- 지체상금 (당초) 3,444백만원 → (요구) 1,722백만원

② 부분사용 운영비 청구 : 1,536백만원

- 종합시운전 기간동안 추가로 하수를 처리(약 9개월, 약 15만㎡/일)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한 하수처리비용

- (서울시 일부 패소) '21.11.24. 「중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」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(1심)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아 우리시가 전부 승소 하였으나, '22.6.7. 원고 항소(2심)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음

- 지체상금 20% 경감 : 3,444백만원 → 2,755백만원(경감액 689백만원)

- 부분사용 운영비 : 기각

-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상고 시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상고를 포기

※ 법률지원담당관, 소송대리인 상고 포기 결정

- (예비비 사용) '22.7.6. 판결금 689백만원 및 이자 161백만원 합계 850백만원을 지급

※ 판결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으며, 연 12%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

- (서울시 승소) '22.6.27. 원고가 부분사용운영비(소가 15.3억) 관련 상고(3심) 하였으나, '22.10.14. 우리시가 승소하여 종결처리 되었음

## 참고자료

## 사업개요 및 소송개요 등

### ① 대법원 판례(2018.10.12. 선고 2015다256794 판결)

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, 계약의 목적과 내용,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,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, 지체상금의 액수, 지체의 사유,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.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.

### ② 종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개요

- 공 사 명 : 종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
- 위 치 :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(종량물재생센터 내)
- 규 모 : 고도처리 88만톤/일, 시설현대화 25만톤/일 등
- 사업기간 : '09. 2. 13. ~ '17. 10. 31.
- 총사업비 : 3,603억원
- 시공/건설사업관리 : 지에스건설(주) 외 2 / (주)한국종합기술 외 1

### ③ 지체상금 과지급금 및 부분사용 운영비 반환 청구소송 개요

- 원고 : 지에스건설(주) 외 2개사, 피고 : 서울특별시, 대한민국
- 소송내용 ※ 소송가액 : 3,258백만원
  - 원고는 2018. 8. 8. '종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' 관련 지체상금 과지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, 부분사용 운영비 청구 소를 제기함.
- 소송결과(1심판결, '21.11.24.) - 서울시 전부 승소
- 소송결과(2심판결, '22.6.7.) - 서울시 일부 패소
  - 지체상금 부과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 **부과 금액의 80% 상당액으로 법원 직권 감액**
    - 시운전 재개에 동절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던 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편에 반함
    -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「국가계약법」의 지체상금을 조항 개정 취지에 맞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
  - 부분사용 운영비는 기각

- 소송결과(3심판결, '22.10.14.) - 서울시 승소
  - 부분사용 운영비(소가 15.3억) 청구 상고
- 지급금액 : 850백만원(판결금 689백만원 + 이자 161백만원)